



서울지방법원

제25민사부

판결

사 건 98가합8290 손해배상(기)

원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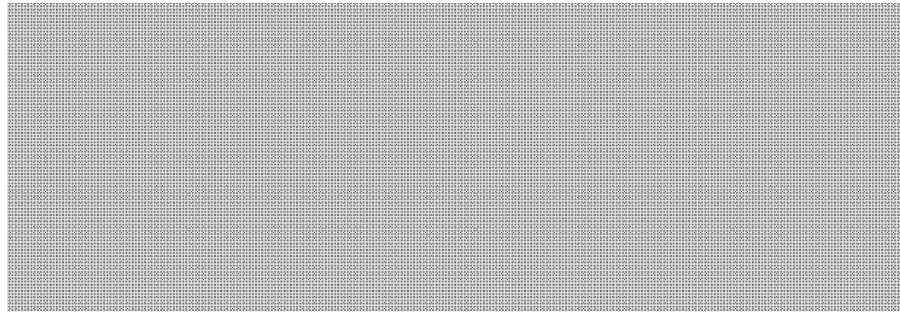
피 고

1.

2.

3.

4.



변 론 종 결

1998. 8. 19.

주 문

1. 피고 [REDACTED], [REDACTED] 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REDACTED] 은 1998. 2. 12.부터, 피고 [REDACTED] 은 1998. 2. 13.부터 각 1998. 9. 2.까지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REDACTED], [REDACTED]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REDACTED], [REDACTED]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REDACTED], [REDACTED] 사이에 생긴 부분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REDACTED], [REDACTE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분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기사의 게재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8,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 []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 []은 []를 발행하는 []의 이사장이고, 피고 []은 위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 []은 [] 대책협의회회의 명예 회장이고, 피고 []은 위 협의회의 회장이다.

나. 피고 []의 망부인 소외 망 []은 []의 소장 겸 []의 발행인으로서 [] 소속 [] 교회(현재 명칭은 [] 교회, 이하 [] 교회라 한다)의 설립자인 원고에 대하여 ' [] ' 1979년 9월호에 ' [] '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은 이래 1983년 3월호부터 1991년 1월호까지 17차례에 걸쳐 원고와 []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고, 그 비리를 폭로하는 내용의 특집 기사와 공개질의서를 게재하다가, 1990. 6. 25. 원고와 화해하여 원고를 비방하지 않겠다는 사과문을 작성하고, 같은해 8월호 ' [] '에 원고는 이단이 아니라 []에 소속된 건전한 목사임을 밝히는 내용의 사과



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의 운전사이고 []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아 총회 신학교 야간부에 다니게 된 소의 []은 []의 위와 같은 행동에 불만을 품고 그 무렵 [] 문제가 대두되어 이에 사회의 관심이 쏠린 틈에 범행을 하면 추적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1994. 2. 18. 위 []을 살해하였다.

라. 원고는 위 []의 위 살인 범행이 이루어지기 4일 전에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일시 귀국한 후 같은달 22일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에 검찰은 원고가 위 범행을 교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혐의를 품고 있었으나 조사하지 못하다가, 원고가 1997. 4. 8. 귀국하자 원고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마. 검찰은 이후 원고와 위 []을 수사한 결과, 위 []이 원고로부터 1994. 2. 6. ' []씨가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될 텐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지, 하나님이 판단을 잘 해주시겠지', 1994. 2. 12. '새끼, 말마다 공수단, 공수단 했지, 아무 것도 아니다. 보이는 사탄도 못 때려 잡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탄은 어떻게 잡을라고 그래, 임마!'라는 말을 듣고 이를 위 []을 살해하라는 것으로 알아듣고 범행을 결심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위 []에게 위 []을 살해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데다가, 위 []도 자기 혼자 결심하여 위 []을 살해한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하였



고, 원고의 위와 같은 말이 위 []에게 위 []을 살해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는 없으며, 원고의 살해 교사의 동기가 미약하고, 위 []을 도피시켰던 소의 [], [], 위 []의 누나인 []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1997. 8. 7. 원고의 살인 교사 혐의 사실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바. 피고 [], []은 검찰의 위와 같은 혐의 없음 결정 이후 각종 간행물, 성명서를 통하여 원고가 위 []의 살해를 교사하였음이 명백하고 사이비 이단 종교의 주도자로서 각종 비리 행위를 자행해 온 자로서, 검찰의 수사와 위 결론은 그 당시의 정권과 결탁하여 이루어졌기에 정권이 바뀌면 재수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위 피고들이 주도하여 발행하는 [] 1997년 10월호에 50쪽 이상에 걸쳐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원고가 여전히 기독교의 이단 종파이며 위 []에 대한 살인을 교사한 자라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피고 []은 1997. 9. 20. 각 언론 기관에 위 혐의 없음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탄핵하는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보도협조문을 발송하였다.

사. 한편, 소의 [] (이하 소의 교단이라고 한다)는 그 교리를 보호하고 신자들의 신앙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산하 상설 기관으로 [] 및 []를 두고 보조 기관으로 []를



설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교단 소속 목사 주장의 이단 여부에 관하여 연구하게 하였는바 원고에 대한 조사 결과, 소외 교단은 1991. 9. 12.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서울 교회에서 개최된 제76회 총회에서 원고의 이단을 문제삼은 별지 제1 목록 순번 4의 가항 기재의 부분을 채택하였고, 이와 동일한 내용을 [redacted]가 발행한 [redacted]라는 제목의 책자에 그대로 게재하여 소외 교단 산하의 지교회에 배포하였는데, 원고는 이를 위 [redacted] 1997년 10월호에 게재하였다.

아. 원고에 대하여 이와 같은 비판이 계속되자, 원고는 피고 [redacted], [redacted]을 피신청인으로 삼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97카합2965호 비방행위금지 및 도서반포금지등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997. 10. 20. 가처분 인용 결정을, 97카합3406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1998. 1. 12. 위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피고 [redacted], [redacted]은 별지 제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기사와 피고 [redacted], [redacted]이 주도하여 작성한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은 성명서를 [redacted] 1998년 1월호에 각 게재하여 발행하였다.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인 98나8976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1998. 6. 11. 피고 [redacted], [redacted]의 항소를 원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 [redacted], [redacte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 사실 적시 부분과 원고의 이단 비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하 나누어 살펴기로 한다.

(1) 살인 교사 혐의 적시 부분

(가)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은 원고가 이미 검찰의 수사 결과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았는데도, 원고가 위 []을 살해할 것을 []에게 교사하였다는 내용을 게재한 [] 1997년 10월호, 1998년 1월호를 발행, 배포하고, 이러한 사실을 언론 기관에 알리는 등의 일련의 행위로 원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은 원고의 살인 교사 혐의 사실과 이에 대한 재수사 촉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바탕으로 한 의견,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여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고, 명예훼손이 되더라도 한국 기독교의 개혁과 순화, 국민과 기독교 신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여러 가지 자료 및 정황에 의하여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의 행위는 검찰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처분의 비판, 재수사 촉구 의견의 제시라면 측면이 있지만, 전체로 볼 때 피의자였던 원고에 대하여는



살인 교사라는 명백한 범죄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서 단순한 평가나 의견 제시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살인 교사 사실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또한 한국 기독교의 개혁과 순화, 국민과 기독교인의 알권리의 보호는 이단 비판의 면에서는 인정될 수 있더라도,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인 수사를 하여 결정한 혐의 없음 처분이 명백히 존재하는 마당에, 또 무죄가 추정되는 원고가 마치 명백한 살인 교사범인 것처럼 주로 자신들의 심중에 터잡아 일련의 사실들을 적시한 것을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단 비판 부분

원고는 피고 [] [] 이 원고가 기독교의 정통 가르침에서 벗어난 이단자로 보게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20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질을 지닌다 할 것이므로, 종교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언론 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 행위로 얻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범,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 행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그 비판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redacted], [redacted] 이 별지 각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 중 원고가 이단이라고 비판한 부분은 그 목적이 원고를 이단으로 몰아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자들을 이단에서 보호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이고, 그 절차에서도 소의 교단의 정식 결정을 거쳤으며, 교리를 비판했을 뿐이고, 그 비판이 피고 [redacted], [redacted] 이 속한 교회와 교단의 공식 견해로 본다면 진실이라고 수긍할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 [redacted], [redacted] 이 원고의 교리와 주장을 비판하면서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개인 비리와 살인 교사 혐의 사실을 관련시켜 [redacted] '에 게재하여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단 비판 부분에 관한 피고 [redacted], [redacted] 의 행위는 전체로 종교 비판의 표현 행위나 의견 제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따라서, 피고 [redacted], [redacted] 의 원고에 대한 위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는



데,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이 사건 [redacted]의 발행 경위 및 내용, 발행 부수 및 배포 범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 [redacted], [redacted]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redacted], [redacted]이 별지 제1 목록 제4의 라항 기재와 같은 성명서를 주도하여 작성하고 [redacted] 1997년 10월호에, 별지 제2 목록 제2항 기재 성명서를 주도하여 작성하고 [redacted] 1998년 1월호에 각 게재하여 발행, 배포해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먼저 위 각 성명서의 내용 중 원고에 대한 이단 비판과 관련된 원고의 주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살인 교사 혐의에 대한 부분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redacted], [redacted]이 원고의 살인 교사 혐의 사실이 담긴 각 성명서의 작성자 중의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피고들이 위 각 성명서를 [redacted]에 게재하였다거나 그 발행 및 배포에 직접 관여하였다거나 위 각 성명서를 공연히 배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redacted], [redacted]은 각자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은 1998. 2. 12.부터, 피고
은 1998. 2. 13.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9. 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분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이 정한 연 2할 5분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 에 대
한 청구와 피고 ,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2.

재판장 판사 이성룡

판사 강한승

판사 류용현



제 1 목록

1997년 10월호 중

1. 표지 중 [redacted] 라는 제목

2. 제6쪽 이하, '지나칠 수 없는 일들' 중 [redacted] 교회 학원설립 인가' 부분

([redacted] 교회의 모체인 [redacted] 학원이 개교하게 되었는데, 학원 설립 인가와 검찰의 원고의 무혐의 처리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지 않다는 내용)

3. 제12쪽 이하, [redacted], [redacted] 무혐의 처리는 고 [redacted] 소장 피살사건의 끝이 아닌 시작' 부분, 피고 [redacted] 명의

(검찰의 원고 무혐의 재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고, 현정권과 원고의 밀착설 의혹이 제기되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원고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

4. 제20쪽 이하, '자칭 말씀의 아버지 [redacted] 씨의 고 [redacted] 소장 살해 배후 전모를 밝힌다' 에서, 편집부 명의

가. '1. [redacted] 과 [redacted] 교회, [redacted] 보고서'에서 [redacted] 씨에 대한 연구 보고' 부분

(원고의 육성 녹음 테이프, 노래집, 설교 리스트, [redacted] 을 비판한 글을 참고로 하여, 원고가 기독교론, 타락관, 계시관, 창조론에서 볼 때 이단임이 명백히 밝혀 졌다는 내



용)

나. '2. 94년 2월 18일 그 후, 고 [] 소장 살해 사건 후 [] 교회의 가면 바뀌쓰기'에
서 '사건일지, 검경수사, 교계대응, 그리고 [] 교회의 변천' 부분
([] 피습 사망 이후 수사 경과와 검찰과 경찰 수사의 문제점, [] 자백의 의문
점, 원고가 범행 지시를 내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행 체계도, 교계의 진상 조사 촉구
탄원서, 사건 이후 [] 교회의 변화, [] 교회 측근에게서 형사 처리를 받지 않도록
부탁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 등)

다. '3. 풀리지 않은 의혹, 상식 께 [] 무혐의' 부분
([] 이 1983년 이래로 원고의 이중 호적, 군 경력, 종교 경력, 전처 소생 딸의 친
자확인소송 승소 사실, 이단 문제를 비판하자, 원고가 자신의 운전 기사인 [] 을
교사하여 [] 을 살해하도록 하였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

라. '4. 다시 진실을 촉구한다. 교계 단체의 성명 발표, 진정서, 성명서'에서 '이단자 []
의 살인교사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부분, 이하 [] 회장
피고 [] , [] 대책위원회 회장 피고 [] , []
[] 회장 [] , [] 회장 [] , []
[] 회장 [] , [] 대표 피고 [] , []
[] 위원장 [] , [] 회장 [] , []



회장 회장 회장

이사장 피고, 고 소장 유족회 대표 명의.

(원고가 이 체포된 후 미국으로 긴급 피신한 점, 이 원고에게 충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살인 교사 혐의가 있으니,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

마. '5.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 교회와 정부에 바란다' 부분,

(1994. 2. 20.자, 1994. 2. 20.자, 1994. 2. 22.자 기사를 인
용하여 소장의 사망을 마지막으로 사이비 종교 규제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사이비 종교 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검찰의 성의 있는 재수사를 촉구하
는 내용)

5. 제44쪽 이하, '컬럼, 씨의 회개를 촉구하며' 부분, 피고 명의

(원고에게 살인 교사의 혐의가 있지만, 형사 처벌에 앞서 우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한
국 교회와 유족에게 용서를 빌라는 내용)

6. 제47쪽 이하, '메아리, 진실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부분의 내용, 의 원고 중 발췌

(원고가 1983년 3월 이후 미행, 감시, 폭언, 협박, 명예훼손, 모욕을 일삼다가, 1983. 12. 2.
에는 법정에서 광신도들을 동원하여 위세를 업어 군대, 호적 문제에 관하여 거짓말로 일관
하였고, 원고가 50,000달러의 밀반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이고, 금력, 권력, 조직력을 동원하



여 진실을 은폐시키고 성직자의 탈을 쓰고 거짓 이력과 조작된 신앙 체험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우매한 신도들을 미혹하게 하여 가정을 파괴하고 재물을 사취하여 배를 채운 자라는 내용)

7. 제51쪽 '이단' 부분, [redacted] 목사의 96년 시집 [redacted]의 [redacted] 중에서
발췌 [redacted]

([redacted] 소장이 살해된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교주가 가로채려는 [redacted]

교회 맹신의 결과라는 내용). 끝.



제 2 목록

1998년 1월호 중

1. 제48쪽 이하, '말씀의 아버지 [] 씨의 10단계 말씀 공부' 부분, 편집부 명의

(엄청난 물량 공세로 이단시비에 종지부를 찍으려 시도하는 한편으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본지에 대해 '도서반포금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공격해 오는 원고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는 내용)

2. 제174쪽 이하, '성명서' 부분, 피고 [], [], 소의 [] 명의

(가. 원고의 기독교론, 창조론, 타락관, 계시관과 정통 교회를 부정하는 이단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원고가 한국 교회, [] 소장 유가족, [] 에 사죄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하는 내용)

(나. [] 이 원고의 충실한 운전사인 점, [] 이 체포된 다음날 원고가 미국으로 긴급 피신한 점, [] 교회의 간부들이 체포된 점, [] 에서 원고의 이단을 규정한 점으로 보아 원고의 살인 교사 혐의가 충분하니, 검찰의 공정한 공권력 발동으로 철저한 계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 끝.